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물재생시설의 체육·주차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를 위하여 주민협의회 주민대표 추천, 위원장 선출 규정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,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,
- 사용료 감면 대상 조항 수정 및 ·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하여 보다 현실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,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